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Vol. 25, No. 2, 2019 (001-013)
Issn 1225-8857(Print) / Issn 2288-9493(Online)
Http://Dx.Doi.Org/10.7851/Ksrp.2019.25.2.001

통합적 농촌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법체계 개편방안 연구

박창원 • 김세빈* • 이준우* • 이보휘* • 김은순** • 구승모**
한국농어촌공사 • *충남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 **충남대학교 농경제학과

Study on Reorganization of the Legal System for the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Chang Won Park • Sebin Kim* • Junwoo Lee* • Bohwi Lee* • Uhn-soon Gim** • Seungmo Koo**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Dept. of Environment & Forest Resour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e rural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in Korea has been implemented with various related acts. For instance, these acts includ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National Land Planning Utilization Act,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etc, enacted by each of adminstration.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encourage the variety of rural development policies due to duplication and overlapping between the relevant acts. Nowadays, the fields of rural development have been evolved and integrated not only by agricultural infrastructures but also in various fields such as multi-functional industry including rural tourism, green care, and cultural welfare, etc. Therefore, the current legal system may not effectively accept and support in various rural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at all. This study tried to figure out the necessity of reorganization related legal system through the field survey to planners, residents and analysts regarding the correlation between legal systems and projects.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problem of current legal system and then, suggested alternative methods related to the legal system for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The scope of the study is as follows; 1)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levant laws and rural development projects. 2)field survey to figure out the legitimacy and validity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al system. At last the result of the research has suggested an alternative method to reorganize the legal system and proposed the new legal system with is good for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Key words : Rural Development Policy, Integrated Rural Plan, Rural Landuse plan, Rural Legal System.

I.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농촌공간의 개발과 정비는 최상위법인 헌법를 토대로 국토계획과 관련된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농촌지역개발과 관련된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다양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토계획법의 경우 도시와 농촌지역을 포괄하는 전국토의 합리적 계획을 통한 질서 있는 개발 및 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농촌공간에 대하여 도시계획 수법을 확대·적용함으로서 여러 연구들에 의해 농촌지역개발의 법·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송미령 외, 2003; 성주인 외, 2011; 이상윤 2011; 이민우, 2016)

2004년 정부에서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

Corresponding author : Seungmo Koo
Tel : +82-42-824-6749
E-mail : koosm@cnu.ac.kr

면서 농정의 새로운 정책 틀을 농업정책, 소득정책, 농촌정책으로 변경하고, 농어촌지역개발이라는 농촌정책에 대한 근거법률로서 「농어업인삶의질법」 제정하였으나, 형식상 특별법의 성격을 갖춤으로서 「농업식품기본법」, 「농어촌정비법」 관련법들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민우 외, 2016)

타 부처의 지역개발사업 경우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경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국토교통부[1]의 경우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 등의 제정·운영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료하게 하고 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농업식품기본법」,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근거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사업과 연계성 미흡, 법률 상호간의 관계가 미정립 되어 일선 현장에서 법률보다는 주관부처의 사업시행지침에 의존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정책과 사업이 관련 법률을 통해 수행되어져야 하는 당연적인 측면에서, 현재까지 농촌지역개발의 근거법 및 절차법이라고 할 만한 법률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과 문제점 등에 근거해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관련 법체계 현황, 관련법률의 특성, 지원한계 등을 분석하고, 3,4장에서 법률개편의 필요성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농촌지역개발 제도개편 당위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5장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농촌지역개발지원 법제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신규법률의 법률의 체계와 내용적 범위를 정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I. 농촌지역개발 관련 법률현황 및 특성

1. 농촌지역개발 관련 법률 현황

농촌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최상위법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Figure 1 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 관련 법률은 「헌법」,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하, '국가균형발전법')부터 「농업식품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15.6)」(이하, '농촌융합산업법')까지 다양한 법률이 상호 연계되어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농촌지역개발과 관련성이 높은 법률들은 「국토계획법(`03.1)」, 「국가균형발전특별법(`04.4)」, 「농업식품기본법(`00.1)」, 「농어업인삶의질법(`04.6)」, 「농어촌정비법(`95.6)」,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 적용 일반원칙 중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원칙이 적용된다면 「농어업인삶의질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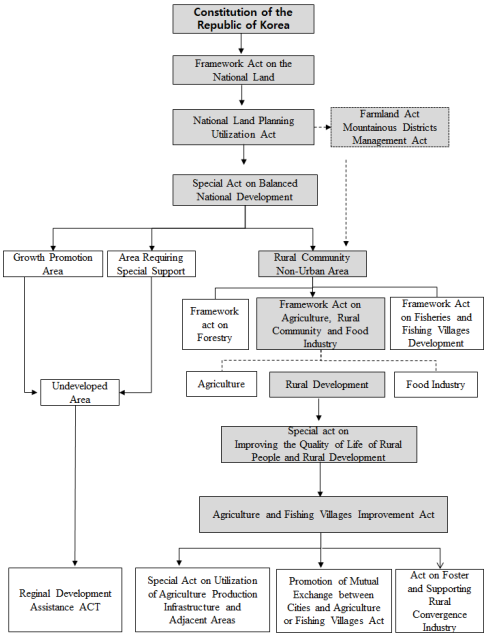

Figure 1. Legal Hierarchy Related to Rural Development

법률체계에서 보듯이 농촌지역개발의 기본근거법은 「농어업인삶의질법」, 개발계획법은 「농어촌정비법」의 위계로 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어업인삶의질법」 제5조(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수립)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5장에서 농어촌지역개발을 규정하고 있고, 개발절차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의 경우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산업육성사업,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개발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농촌지역개발 관련 법률을 분석하기 위하여 농촌지역개발정책(사업)에서 활용되는 근거법률과 지원대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 분야 (기초인프라구축, 소득개선, 도농교류, 주거환경

Table 1. Relevant Law related of Rural Development Project(Policy)

Classification	Project(Policy)	Relevant Law
Basic Living Infrastructure	Rural Development project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People and Rural Development
		Agriculture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Saethu Maul Project	Agriculture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Rural Landscape Plan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People and Rural Development
		Agriculture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Landscape Act
	Vibrant Rural Pilot Project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People and Rural Development
		Agriculture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Income Improvement	Rural Convergence Industry Promotion Project	Agriculture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Promotion of Mutual Exchange between Cities and Agriculture or Fishing Villages Act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Rural Convergence Industry
	Rural Communities Reinforcing Project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People and Rural Development
		Agriculture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Development Project for Area Requiring Special Support	Border Area Support Act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Multi-functional Utilization of Rural Resource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People and Rural Development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Agriculture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ssistance of Agro-industry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People and Rural Development
		Agriculture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Promotion of Mutual Exchange between Cities and Agriculture or Fishing Villages Act
		Food Industry Promotion Act
	Local Industry Promotion Project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People and Rural Development
		Agriculture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nd Rural Convergence Industry
Urban and Rural Inter-exchange	Rural Thema Park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People and Rural Development
		Agriculture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Promotion of Mutual Exchange between Cities and Agriculture or Fishing Villages Act
	Rural Tourism	Agriculture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Residential Environment Promotion	Creativity Village Project	Agriculture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Housing Act
Management	Supporting to Rural Development Project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People and Rural Development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griculture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개선, 운영관리)의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법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농어업인 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을 기본근거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추가로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관련 상하위 법률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농촌지역개발 직·간접적인 관련법률을 추출하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분야별[2] 검색을 통해 관련 법률(10개)과 관련 법률조항을 Table 2와 같이 분석해 보았다. 4개 법분야, 10개 법률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Table 2. Relevance with the Related to act and Rural Development

Field	Relevant Law and Articles
Constitutio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Article 123) -Article 123(1) The State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a plan to comprehensively develop and support the farm and fishing communities in order to protect and foster agriculture and fisheries
National Land Development and Cities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3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Land),Article 16 (Formulation of Regional Plans), Article 17 (Formulation of Sector Plans)
	National Land Planning Utilization Act -No Information about Rural Development. (Only, Included Land-use Regulation of Rural Area)
	Regional Development Assistance Act
Local Government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rticle 34 (Revenues and Expenditures of Regional Development Account) -Article 35 (Revenues and Expenditures of Economic Region Development Account)
Agricultur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Article48 (Formulation of Measures for Development of Rural Areas) -Article54 (Enhancement of Welfare of Residents in Rural Communities)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People and Rural Development -Article38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Agriculture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Chapter 3.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of Rural Communities -Chapter 7. Village Development Zone
	Promotion of Mutual Exchange between Cities and Agriculture or Fishing Villages Act -Article 8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Article 9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10 (Special Exception to the Food Sanitation Act)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Rural Convergence Industry -Chapter 5. Designation and Nurturing of Rural Convergence Industry Districts

분석되었는데, 국토개발 및 도시 분야에서는「국토기본법」,「국토계획법」,「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이하, '지역개발지원법'), 지방재정분야에서는「국가균형발전법」, 농업분야에서는「농업식품기본법」,「농어업인삶의질법」,「농어촌정비법」,「도농교류법」,「농촌융합산업법」 등의 법률을 개별 법분야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10개 법률을 공간적인 역할과 법률에서 담고 있는 지원내용을 참고하여 재분류해 보면, 공간적인 측면에서 전국토를 대상하는 법률의 경우는「국토기본법」,「국토계획법」,「국가균형발전법」 등으로 분류가 되고, 농촌지역은「농업식품기본법」,「농어업인삶의질법」,「농어촌정비법」,「농촌융합산업법」,「도농교류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적 측면은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두 가지 측면을 구분해 보면,「국토기본법」,「국토계획법」,「농어업인삶의질법」,「국가균형발전법」,「농업식품기본법」은 계획수립의 근거 법률,「농어촌정비법」,「도농교류법」,「농촌융합산업법」,「지역개발지원법」은 사업시행 등을 지원하는 절차법으로 규정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 근거법률들은 법률 상호간의 연계성을 통한 통합적 농촌지역개발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고 분석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하위 법률간 중복, 복잡한 법률체계의 구성과 운영으로 농촌지역주민과 정책을 수행하는 참여주체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는 결국에는 상향식 주민참여 방식을 통한 통합적 농촌지역개발을 달성,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집행, 성과평가, 자립화 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농촌지역개발의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농촌지역개발의 정책수립, 계획수립, 사업시행, 운영관리, 주민참여 등의 농촌정책과 개발 사업들도 근거법률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므로 농촌지역개발 근거법령 마련은 농촌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농촌지역개발 관련 법률의 내용적 특성

농촌지역개발을 관련 법률들의 내용적 특성과 지원내용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지원내용을 18개 규정항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① 정책지원 근거법률인 「국토계획법」, 「농업식품기본법」, 「농어업인삶의질법」, 「국가균형발전법」들은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수립', '계획승인 및 의제처리', '주민의견청취(공청회)', '계획권 지정·승인', '시행계획수립', '국공유 재산', '협의체 운영', '재정지원' 등을 주요내용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② 사업시행 절차 법률인 「농어촌정비법」, 「지역개발지원법」은 '계획수립·변경절차', '사업계획권(지구)설정 및 운영', '행위제한', '사업시행 및 준공검사' 등의 사업시행 절차를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었다.

③ 농촌지역개발 지원 법률인 「도농교류법」, 「농촌융합산업법」, 「지원개발지원법」 등은 '지원기구 및 조직운영', '인력양성', '인증 및 평가' , '재정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었다.

최근 제정된 「지역개발지원법」, 「농촌융합산업법」의 경우, 사업계획 및 시행, 규제 뿐만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구지원, 인력양성, 재정지원 등의 관련 지원정책 분야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법률적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촌지역개발은 「주민참여·자원 발굴→계획수립→시행→평가→자립화」 등 선(先)계획 후(後시)시행의 개념과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는 상향식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제는 계획근거법률, 사업시행 및 절차법률, 지원 법률로 구분되어 있어, 일선 현장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모든 법령을 숙지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또한, 각 법령에서 제시하는 내용 등이 상충됨에 따라 법령의 적용 기준이 주관적인 경향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다행히 2004년에 제정된 「농어업인삶의질법」 경우 농촌지역계획수립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타 법령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역개발 및 활성화의 중요성을 선언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주민참여, 상향식 계획수립 및 실행, 지원 및 평가, 자립화 등의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찾아보기에는 미흡

Table 3. Main Contents of Related to Rural development act

Classification	National Land Planning Utilization Act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People and Rural Development	Agriculture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Promotion of Mutual Exchange between Cities and Agriculture or Fishing Villages Act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nd Rural Convergence Industry	Regional Development Assistance Act
Status Survey							●	
Master Plan	●	●	●	●	●		●	●
Setting Project Zone				●	●		●	
Special Purpose Area	●							
Decision	●	●		●				●
R&D		●	●					
Development Zone		●		●	●		●	●
Restriction Act	●				●			●
Inspection on the Completion Construction					●			●
State Property					●			●
Development Council	●	●		●	●		●	●
Intermediary Organization		●	●	●		●	●	●
Designation Self-sustaining						●	●	
Evaluation Monitoring		●		●				●
Supporting of Agro-Industry		●	●	●				
Financial Support		●	●	●	●	●	●	
HRD		●	●			●	●	
Tex Exemption				●				●

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보완대책의 하나로 법률의 분법화를 찾아볼 수 있는데, 농업분야에서 「농촌융합산업법」과 「도농교류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정비법」 제5장(농어촌산업 육성・지원)은 제72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73조(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제74(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평가(제76조)로 구성되어 농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농촌융복합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농림축산식품부, 2013)에서 별도법으로 「농촌융합산업법」을 2015년에 제정하였다. 이외 농업분야의 분법의 사례로써는 「축산법」을 「축산법」과 「말산업육성법」으로 분법하여 별도 법률로 제정한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개발 분야에서 신규정책 사업을 추진을 위한 신규법률 제정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정책사업인 도시재생사업 등의 추진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2013년제정)」, 「지역개발지원법(2015년)」을 제정하였다.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개발법」과 유사한 「농어촌정비법」이 오랫동안 사업시행을 위한 근간을 유지해 오고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시대적인 변화와 흐름에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편적인 예로써, 마을정비구역은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뉴타운 등의 집단화된 면적개발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예산신청절차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는 상황(성주인 외, 2011)으로 현재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III. 농촌지역개발 관련 법체계 개편 필요성

1. 농촌지역개발 외연적 범위 확장

농촌지역개발은 농촌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농업생산기반, 주거환경개선, 문화복지, 경관, 소득증대, 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책적인 패러다임도 농업생산위주, 지역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에서 농업의 다원적 가치증진, 농산업 융복합화, 농업치유, 문화복지, 관광체험 등 다각화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는 점이 현실이다.

통합적 농촌지역개발은 농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활동, 주거, 환경, 인프라, 교육, 교통, 사회복지, 소득증대 등 다양한 분야가 결속된 특성을 지니며 한 가지 집중적인 정책투입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시스템적인 특성을 있다.

농촌지역개발은 내용적 확장, 부문적 접근(sectoral approach)에서 지역적 접근(territorial approach)로 변화(김광선, 2011)하고 있는 시점에서 위와 같은 변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근거법, 절차법의 마련을 통해 통합적 농촌지역 개발의 내생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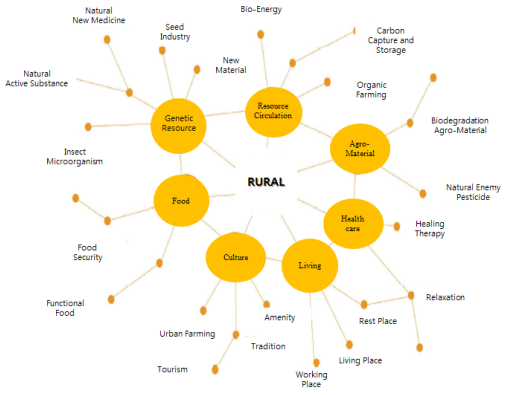

Figure 2. Extensional Expansion of Rural Development

2 농촌지역개발 현행 법률의 한계

농촌지역개발과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지역개발정책인 생활환경정비의 경우, 「농업식품기본법」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농어업인삶의질법」제5장(농어촌지역개발), 「농어촌정비법」 제4장(농어촌생활환경정비), 「농어촌마을주거환경개선및리모델링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농어촌리모델링법') 제5조(농어촌마을정비종합계획의수립) 등에서 관련 조항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분야에 여러 개의 법률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법률내용의 중첩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순기능도 있겠지만, 법률간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사업의 근거와 절차가 서로 다른 법에서 규정되다 보면 사업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이라는

Table 4. Special Purpose Zone related to Rural Development

Relevant Law	Classification	Competent Authorities
Agriculture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Village Development Zone	MAFRA
	Marginal Farmland	MAFRA
Farmland Act	Agriculture Promotion Area	MAFRA
	Agriculture Protection Area	MAFRA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nd Rural Convergence Industry	Rural Convergence Industry Districts	MAFRA
Forestry and Mountain Development Promotion Act	Forestry Promotion Zone	KFS
Framework Act on Forestry	Mountain Village Development District	KFS
Forest Protection Act	Forest Conservation Zone	KFS
Grassland Act	Grassland	MAFRA
Border Area Support Act	Border Area	MOIS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Growth Promotion Area, Area Requiring Special Support	MOTIE
Regional Development Assistance Act	Regional Simulation Area	MOLIT
National Land Planning Utilization Act	Control Area, Agricultural Area,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	MOLIT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griculture and Industrial Complex	MOLIT

측면에서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이민우 외, 2016)

단편적인 사례로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심지 활성화사업 경우, 부처(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이견대립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도·시군 관리 기본계획 변경, 인·허가권자 협의 , 용지매수 등으로 사업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2016)

따라서, 통합적 농촌지역개발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 자립화, 관리운영, 역량강화 등을 위해서는 농촌지역개발의 근거법, 절차법을 동시에 규정할 수 있는 통합적 법률마련과 동시에 관계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3. 농촌지역개발 관련 지역·지구 양산에 따른 문제점

국토계획법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정비한 통합법으로서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하여 종합적, 계획적으로 국토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용도지역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4개 용도지역으로 구성되고 있고, 용도지역을 공간의 기능강화 등을 위해 용도지구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은 토지에 대한 중복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시장·군수)는 조례에 의해 필요한 지역, 지구, 구역 등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은 도시와는 달리 생활공간, 생산공간, 나아가 자연공간이 중첩적인 특성을 보이는 지역으로 단일 기능을 수행하는 토지의 용도 세분화 달성에 집착할 경우 오히려 본래 기능 발휘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송미령, 2002)

이러한 내용은 Table 4에서 보듯이 다양한 농촌지역개발 관련 지역·지구의 관련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래 개발 목적 달성과 성과도출이라는 최적 시스템을 지원하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상호 중첩된 지역과 지구의 지정 등으로 적극적인 농촌지역개발이 제한된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

법률의 예로써,「농어촌정비법」 제7장(마을정비구역),「농어촌리모델링법」 제2장(종합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 둘 다 농촌공간정비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정비구역을 별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한 지역에 많은 지역, 지구가 중복적으로 지정된 것은 지역, 지구 지정에 대한 일관된 기준과 통제장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개별법령에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여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또는 지구를 의미가 없는 곳을 지정할 경우, 많은 행정적인 낭비와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행동의 제약과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통합적 농촌지역개발의 내실 있는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농촌지역개발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지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농촌계획제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농촌지역계획→농촌지역계획관리구역→농촌개발사업지구(가칭)→농촌계획시설"로 연계되는 농촌지역계획 및 지역지구의 위계정립이 필요할 것이며, 계획수립 당사자인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협약(계약 등)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현장(설문)조사

앞 장에서 언급한 제도개편의 필요성에 타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조사(Focus Group Interview)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FGI는 2017년 8월, 9월, 10월 3회에 걸쳐 전북, 충남,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전북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충남은 지역 공무원, 강원은 평창군의 주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의 애로사항 및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포괄적인 내용의 법제도 개선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Table 5와 같이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방법은 온라인 설문사이트(www.ozsurvey.co.kr)를 활용하여 농어촌공사, 민간업체, 지자체담당자, 마을리더 등을 대상으로 1주일간 실시하였다.

Table 5. Summary of Field Survey

Classification	Summary
Period	Oct/2017
Participant	Local Government and Agency Officer Resident, Private Enterpriser, etc.
Method	On-line Questionnaire

1. 현장인터뷰(F. G. I) 실시결과

인터뷰(F. G. I) 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면,

① 현행 법령의 운영실태

대부분의 참가자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해 시업별 근거법률 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업시행지침을 활용하고 있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이 근거법률 이지만, 사업추진절차에 대한 규정 미흡으로 사업시행지침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심지활성화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읍·면소재지)가 도시계획과 연관성이 높아 도·시군관리기본계획 변경과 더불어 각종 인·허가 및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 시행되는 '활기찬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의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관광휴양, 홍보, 역량강화 분야 등의 통합적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질 수 있는 근거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일선 현장에서 세부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관련법률 검토와 시행지침의 검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획일적 기준이 없어 지역마다 법적 해석과 적용기준이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 등 활용현황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등의 농어촌정비사업의 운영을 위해 마을정비구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마을정비구역은 집단화된 면적인 개발(전원마을, 농어촌뉴타운 등)에서 활용되고 있고, 점적인 형태 분산·연계되어 진행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처럼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시설기준이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조사되었다. (이상윤, 2011).

또한, 최근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예전의 생활환경정비뿐만 아니라, 농산업육성, 체험관광, 역량강화 등 다양한 사업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다분화 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정비사업의 분법화로 통해 개별법이 제정된 사례를 볼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체험마을육성지원 및 도농교류정책, 농촌주거환경정비 등 특정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융합산업법」, 「도농교류법」, 「농어촌리모델링법」별도의 법을 제정하였다.

③ 상향식 계획에 대한 지원미흡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상향식 주민참여 계획을 요구하

고 있으나, 재정적기반이 비교적 약한 지방정부, 마을, 공동체 등이 농촌지역개발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예비계획수립 등 재정 및 인력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법제도 개편의 필요성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자립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직운영 및 관리, 공동시설의 운영 및 법인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등 자립화 관련 법적근거도 같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농촌지역개발이 특정 공간에서 이뤄지는 한정된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관계자들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실행되고 있기에 일부 특정 지역과 사례를 조사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법제도의 개편의 타당성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설문조사는 사업에 실제 참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민간업체 ,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내용 등을 조사해 보았다.

설문조사의 문항(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법·제도에 대한 부분에만 초점을 둘 경우 문제점에 대해 현실보다 과한 인식이 도출될 수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전체 과정과 요인들을 조사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설문 참여자는 61명으로 농어촌공사(29명), 민간업체(14명), 중간지원조직 및 마을주민(10명), 지자체(5명), 학계(3명) 순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결과,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장애나 혼란을 겪은 비중의 경우에 대한 결과는 86.9%는 유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주된 원인으로 '사업과 관련된 명확한 지침의 부재','근거법률 부재나 관계법률 혼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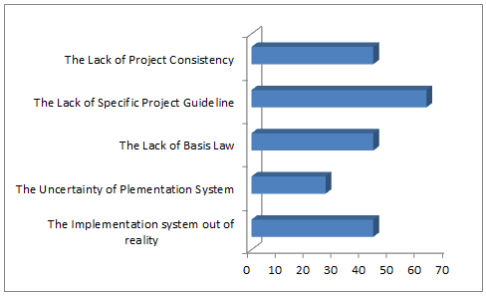

Figure3. Main Reason for Obstacle and Confusion in the Execution Process(%)

사업추진과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법제도는 '농어촌정비법'과 '농림사업시행지침' 등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촌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명확한 법·제도의 정비', '정책이 가지는 목적의 명확한 설정', '자립화를 위한 사업평가' 순으로 조사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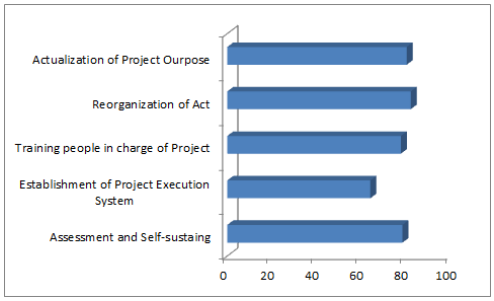

Figure 4. The Essential Factor for Revitalization of Rural Development(%)

농촌지역개발 관련 법제정비수준 조사항목에서는 평균40점 이하로 법제도의 개편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요소로는 '사후관리체계 확립(83.8)', '관련법률 개정(81.0)','신규법률의 제정(74.3)' 등으로 사업자립화을 위한 근거법률의 정비와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농촌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는 '사업 모니터링 및 피드백(feed-back)을 통한 사업지구 활성화', '근거 법률제도 정비', '계획수립비 등 관련 비용 산정기준 정립', '예비계획수립을 위한 재정지원',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등이 조사되었다.

3. 현장조사 시사점

현장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별사업 및 정책이 가진 본연적인 문제 이외에 외적요인으로 법·제도의 중복 및 혼재, 근거법률 부재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결과, 대부분의 사업관계자들이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애나 혼란을 겪고 있는데, 주된 이유로 "사업과 관련된 명확한 지침의 부재"와 "근거법령 혼재"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응답하고 있고, 농촌지역개발사업 관련 법령정비수준은 평균 30점 중반~40점 초반으로 관련 법률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현장 인터뷰(FGI)에서 법·제도가 가진 본연적인 문제보다 사업추진과정에서 겪었던 불명확한 지침, 타 법률의 규제로 인한 인허가의 어려움 등의 장애요인에 대한 불편을 크게 호소하였다.

이런 불편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 혹은 정비부족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근거법률의 미비, 사업지침의 한계 등으로 인해 업무처리의 지연 등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장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면,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관련법률 정비 위한 신규법률 제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업무혼선의 최소화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인 것을 알 수 있었다.

V. 농촌지역개발 관련 법제 개편 방안

농촌지역개발은「국가균형발전법」,「농어업인삶의질법」,「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다.

농촌지역개발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농어촌정비법」은 "예비계획→계획수립→시행→평가→자립화" 일련의 농촌지역개발 과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각 사업별 사업시행지침은 특정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집행방법 등의 행정집행과정을 지원하고 있어 보다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내용에서 보듯이「국가균형발전법」,「농어업인삶의질법」,「농어촌정비법」 등이 농촌지역개발의 근거법률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농촌지역개발분야의 다각화, 농촌지역의 경제사회적 활동의 다양화되고 산업 및 분야, 지역간의 융복합화, 4차산업 혁명기술의 농촌지역개발 적용 등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분야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체계의 개편은 사업발굴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농촌지역개발의 지속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들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 관련규정을 분법화 하여 신규법률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관련 법률의 농촌지역개발 규정 등도 개정하는 방향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농촌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통한 통합적 농촌지역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촌지역개발사업들의 근거와 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가칭)농촌지역개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농촌지역개발지원법)"」 제정 또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1. 제도개편의 주요내용

농촌지역개발의 법제개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본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신규법률에 적합한 농촌지역개발의 법적 개념의 재설정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개발은 현재 농어촌정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을 고려해 볼 때 공간적으로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지역주민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공간)단위개발을 의미하지만, 보다 포괄적인 개념에서 지역개발지원법에서 규명하고 있는 지역개발계획의 개념을 공간적, 내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개념을 재설정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개발계획의 법적개념은 '농촌지역 자원의 활용과 연계, 지역주민참여를 기본적인 전제로 공공의 예산을 통해 농촌지역의 삶의질 향상 및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개발계획'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업시행을 위한 선계획, 후시행의 기본원칙을 담아야 할 것이다.

「농어업인삶의질법」과 「농업식품기본법」의 기본계획,「농어촌정비법」 11개 계획을 통폐합하고, 일정주기(3~5년)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농촌지역개발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계획고권의 본질적 의미를 회복하고 농촌지역의 토지이용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토계획의 기본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의 틀 안에서 농촌지역의 최근접 단위인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농촌지역개발계획 수립의 기본적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직접적인 계획고권의 인정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농촌계획에 대한 참여 및 조정 등의 권한을 통해 간접적인 계획고권을 인정하는 것이 방향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에서는 지역, 지구제도를 운영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있으나, 인구, 산업, 서비스 등의 밀집에 따른 부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토지이용효율성을 증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과밀화되는 토지이용현황이 아닌 상태에서 광역 상위개념의 국토계획법의 지역·지구제에 의한 토지규제는 현실적으로 큰 실효성을 보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현행 농촌지역개발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인 「국토계획법」상의 토지이용계획과 연계를 위해 '농촌지역개발계획구역'과 '농촌지역개발사업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농촌계획시설의 기준정립 등의 규정을 통해 각종 인·허가 행정처리 간소화, 통일된 농촌지역개발 기준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법률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네 번째, 농촌지역개발계획의 계획고 확보를 위한 통합법 제정이다.

현행법 체계에서 지역의 계획고권이 실종된 근본적 원인인 개별법 난립으로 인한 계획 상호간의 체계모순 및 계획주체의 다양성에 있음을 고려 할 때, 종래의 개별법 체제 대신 농촌지역개발의 주체, 농촌지역개발의 법적근거 확보, 농촌지역개발계획 및 사업의 절차 등 기본원리를 규율하는 통합법을 제정하여 농촌지역개발의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법에 의한 지방자치분권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헌법적 보장의 취지에 상응하도록 구현함과 동시에 농촌지역개발의 상향식 발전이라는 양 측면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농촌지역개발지원법」의 성격과 체계

대안으로 제시한 「농촌지역개발지원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근거법과 사업법으로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 것이다.

타 부처의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토계획법」과 동일한 위상은 아니지만, 농촌지역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특정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법보다는 위계가 높은 점을 감안해 보면,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고, 관련 법조항의 통폐합으로 통한 농촌지역개발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개발지원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지역개발 및 사업 범위정립, 농촌지역개발구역의 지정, 주민협약, 농촌지역개발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업평가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농촌지역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지원, 재정지원, 평가·자립화 등의 관련조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과 관계가 모호해 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농어촌정비법」에 '농촌계획시설의 결정 및 입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개정법률로 개정함으로써 농촌계획의 위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법률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통폐합을 통해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근거법률이 마련된다면 부처별, 정책별로 중복 지원되는 농촌지역개발의 통합적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농촌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I. 결론 및 제언

현행 농촌공간의 개발과 정비는 상위법인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그리고 개발법인 「농어촌정비법」 등에 근거를 두고 진행되고 있다.

농촌지역개발사업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헌법→국토기본법→국토계획법→농업식품기본법→농어업인삶의질법→농어촌정비법」 등의 위계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농어촌정비법」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지역개발사업은 법률제정 당시 1990년대의 상황과는 차이를 보임으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 절차법이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접근이 시도된 것도 사실이지만, 농촌지역개발 행정도 법률을 근거하고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인 '법치행정의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함에 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러 법률에 농촌정책의 근거와 절차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통합적인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목표인 내생적 발전을 달성하기에는 처음부터 무리가 있는 것이다.

현행법령의 개정의 경우에는 관련되어 있는 법령들의 통합적 개정이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신규법률의 제정의 경우, 다양한 정책사업 등의 일관성 있는 지원을 통해 내실있는 지역개발사업과 지역주민주도의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현행 법령의 개정보다 신규법률(안)의 제정이 통합적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보다 적합한 제도개편으로 판단된다.

신규 법률 체계는 「국토계획법」과 동일한 위상은 아니지만 농촌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일부 담아야 할 것이며, 「농업식품기본법」, 「농어업인삶의질법」

에 근거를 두고, 「농어촌정비법」과 특정사업을 지원하는 개별사업법보다는 위계가 높아야 할 것이다.

신규법률은 기본법인 동시에 개발법의 성격을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총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법률의 내용도 기본법과 사업시행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장조사에서 파악되었던 근거법령 부재 및 사업시행지침의 한계 등를 해소하고 관련법률의 통폐합을 통한 행정의 간소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법률은 계획수립권자의 계획고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위법과의 조화를 위해 농촌지역개발구역 지정, 주민협약,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업평가 및 지원조직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농촌지역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지원,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현장조사 중심으로 짧은 기간에 진행한 결과로서 여러 가지 연구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추후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제도개편 및 신규법령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보존을 포함해 농촌공간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부처별 협의 필요할 것이며, 보다 세부적인 농촌지역개발 근거법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과 신규법률제정의 국가정책적인 필요성, 신규법률의 효과 및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1) 행정안전부 :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국토부 : 도시활력증진사업

주2) 국가법령정보센타(law.go.kr)에서는 전체법률을 44개 법분야별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음.

References

1. Choi,H.J., Ji, D.S., Kim, S.J., 2007. The Rural Land Use Management for Rural Viability.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
2.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 2006. The State of the Countryside 2006. Countryside Agency.
3.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 2007. The State of the Countryside 2007. Countryside Agency.
4. Kim,K.S., 2004, Study on the Chang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Policy in Rural Area.
5. Kang,M.S., 2010,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Social Acts Related to Regional Development.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6. Kim,B.R., Lee,M.K., Kim,D.H., Rhew,C.H., Park,J.K., 2017. The Extension of Value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to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Agriculture Policy
7. Lee,S,Y., 2011, A Study on the System of Rural Development Act. 2011.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8. Lee,M.U., Kim,J.T., 2016, The Legal System and Limitation of Rural Development Act. Korea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9. Lee,J.H., Park,S.H., Lee,S.M., 1993, A Basic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Rural Renewal Program.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0.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7, Report of Rural Development Division.
11.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7, The Implementation Plan for 2017 Government Issues.
12.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08, A Guide Book of Promotion of Mutual Exchange between Cities and Agriculture or Fishing villages Act.
13.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7, A Study on the Legal Systematization of Fishing Village Port and the Revision of Sub act.
14.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3, A Study on Legislation the Rural Industry Development Act.
15.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7, Implementation Guidelines for Agriculture Project.
16.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4,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the Complete Region in Rural Development Project.
17. National Planning Advisory Committee,, 2017. A Five year's Plan on the Moon Jae-In Government
18. Park,C.W.,2004, Resource Evaluation Skill to set Development Direction Rural Village. Journal of Korea Society of Rural Planning Vol 10, No1

19. Seong,J.I., Song,M.R., Kim,Y.D., Kwon,I.H., 2011, Policy Direction of Improving Rural Development Planning System.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 Song,M.R., 2003. Rural Land Use Planning and Policies under the New National Planning System.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1. Yoon,W.K., 2016. A Study on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and Methods for Rural Development.

- Received 1 February 2019
- First Revised 15 February 2019
- Finally Revised 27 February 2019
- Accepted 15 March 2019